#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승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43

발의연월일: 2024. 7. 15.

발 의 자: 강승규·백종헌·박성민

성일종 • 이철규 • 고동진

이종배 · 조은희 · 강대식

이인선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·도지사가 시장지역, 공장·창고가 밀집한 지역,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또한, 소방관서장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, 외국인근로자와의 소통 문제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피해가더 커졌으며, 리튬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·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는지적이 있음.

이에 시ㆍ도지사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

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·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, 화재취약자에 외국인근로자를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18조 및 제23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#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1호(종전의 제10호) 중 "제9호"를 "제10호"로 한다.

7.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

제23조제1항 중 "장애인"을 "장애인, 외국인근로자(「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말한다)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	제18조(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
등) ① 시·도지사는 다음 각	등) ①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	
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	
하여 관리할 수 있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7.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대
	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속을 취
	급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
<u>7.</u> ~ <u>9.</u> (생 략)	<u>8.</u> ~ <u>10.</u> (현행 제7호부터 제9
	호까지와 같음)
<u>10.</u> 그 밖에 제1호부터 <u>제9호</u> 까	<u>11.</u> <u>শ্বা০ই</u>
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	
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	
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	
는 지역	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23조(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	제23조(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
지원) ① 소방관서장은 어린이,	지원) ①
노인, <u>장애인</u> 등 화재의 예방	<u>장애인,</u> 외국인근로자
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(이하	(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
"화재안전취약자"라 한다)의 안	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외
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	국인근로자를 말한다)

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	
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	
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	
한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